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0,918,229	9,627,547
일반회계		285,756,246	8,572,687
특별회계		35,161,983	1,054,859
	공기업특별회계	13,808,125	414,2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808,125	414,244
	기타특별회계	21,353,858	640,61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7,817	32,935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821,796	54,65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32,106	45,963
	담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4,330	5,230
	기반시설특별회계	451,965	13,559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41,825	16,255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783,019	23,491
	주택사업특별회계	4,157	125
	수질개선특별회계	14,946,843	448,405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사업) : 2010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118,789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예산의 이용)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